

제335회 임시회  
2014.10.24(금)

# 심사보고서

-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2014. 10. 24 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: 김학철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4년 10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0월 14일

(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학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조례의 내용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규정된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(제7조 제3호와 제4호)
- 규제개혁 대상 내용 삭제(제7조 제2호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'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규정된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# 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6조(생 략)	제1조 ~ 제6조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탁의 취소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	제7조(위탁의 취소)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</u>	<u>2. (삭 제)</u>
<u>3.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</u>	<u>3. (삭 제)</u>
<u>4. 기타 도지사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</u>	<u>4. (삭 제)</u>

## 관 계 법령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5조(사용 · 수익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·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 · 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 · 수익하게 한 경우
  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  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 · 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  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  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· 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
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2014. 10. 24 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0월 14일

(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재길 경제통상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자치법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·도민에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실시하고,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일부 개정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명칭 변경 및 규제범위 조정(안 제5조, 제14조)
  - 고용센터소장→고용센터직원
  - 심사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추가
  - 고용심의회→노사민정협의회
  - 사업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→사업실적
-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 삭제(안 제16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‘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안 제5조를 개정함은 물론, 동 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‘사회적기업 육성법’ 제19조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있어 현재 운용중인 조례의 16조를 삭제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 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고용센터소장”을 “고용센터직원”으로 하고, “10명이내로 구성한다”를 “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위촉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고용심의회”를 “노사민정협의회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사업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”을 “사업실적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지역내 학계, 경영계, 지방고용노동관서 <u>고용센터소장</u>과 민간전문가 등 10명이내로 <u>구성한다.</u></p>	<p>제5조(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고용센터직원</u>----- -----<u>구성하되, 성별</u> <u>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위촉 할 수 있</u> <u>다.</u></p>
<p>③ (생략)</p> <p>④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<u>고용심의회</u>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u>노사민정협의회</u>-----.</p>
<p>제14조(보고 등) ① 지정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<u>사업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</u>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보고 등) ① ----- -----<u>사업실적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~③ (생략)</p>	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
## 관 계 법령

### □ 사회적기업 육성법

- 제17조(보고 등)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 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, 지도·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
제19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□ 여성발전기본법

- 제15조(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□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

제2조(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내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충청북도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### ②~④ 생략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□ 2014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

### chapter 07

#### 04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

##### 3. 사업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

광역자치단체장은 사업개발비 사업참여기업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10인의 전문심사위원회를 둔다(관할 고용 센터 직원 포함)